#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67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위성곤·모경종·허 영

주철현 · 박희승 · 한병도

서영교 • 이개호 • 박정현

강선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인간 사회는 물론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음. 특히 개발행위 등 지구 생태계와 다양한 생물종에 미치는 인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의견이 제기됨.

제주도는 다양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이자 200 만년에 걸쳐 빚어진 화산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의 가 치를 담은 관광을 활성화하면서도 자연과 생태를 교란하지 않는 생태 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이에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1조의2 신 설), 이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안 제 361조의3 신설)하는 한편,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안 제361조의4 신설)하고, 재원을 마련(안 제361조 의5 신설)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1조의2부터 제36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1조의2 (생태법인의 설립 및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대상, 지정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제3항에 따른 해제를 하려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 ⑤ 도지사는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 절차,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제361조의3 (생태법인의 권리와 의무) ① 생태법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전 및 보호 요구권
  - 2.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 3.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 4. 개발 제한 요구권
  - 5.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
  - ② 생태법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할 의무
  - 2.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의무
  - 3. 인간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의무
  - 4.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의무
  - ③ 생태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되 집합적으로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생태법인은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361조의4 (생태법인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지정한 생태법 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하여 생태법인별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생태법인의 권리 보호 및 의무 이행 지원
- 2. 생태법인의 권리 침해 시 법적, 행정적 대응 지원
- 3. 생태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61조의5 (재원) ① 생태법인의 권리 행사 및 이익의 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충당한다.
  - 1.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 2. 민간 기부금
  - 3.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부담금
  - 4. 환경 관련 국제 기금 및 보조금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충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진행된 생태법인 권리 침해 사업은
본 법에 따라 평가 후 필요 시 제한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361조의2 (생태법인의 설립 및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
	치도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
	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 생
	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
	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대상,
	지정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
	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
	<u>다.</u>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이나 제3항에 따른 해제를 하려
	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
	<u>아야 한다.</u>
	⑤ 도지사는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 적정한 보상
	을 할 수 있다. 보상 절차,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

### <신 설>

로 정한다.

- 제361조의3 (생태법인의 권리와 의무) ① 생태법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서식지 및 생태계의 보전 및 보호 요구권
  - 2.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 3.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 구권
  - 4. 개발 제한 요구권
  - 5.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
  - ② 생태법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할 의무
  - 2.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을보존할 의무
  - 3. 인간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 존을 추구할 의무
  - 4.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 진할 의무
  - ③ 생태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되 집합적으로만

<신 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생태법인은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제361조의4 (생태법인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지정한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하여 생태법인별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 1. 생태법인의 권리 보호 및 의 무 이행 지원
- 2. 생태법인의 권리 침해 시 법 적, 행정적 대응 지원
- 3. 생태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지역 주민, 생태 전문 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 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61조의5 (재원) ① 생태법인의

<신 설>

권리 행사 및 이익의 보호 등에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충당한다.

- 1.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 2. 민간 기부금
- 3.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부 담금
- 4. 환경 관련 국제 기금 및 보조 금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충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 례로 정한다.